

제245회 정례회
2005. 12 12(월)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□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「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

-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의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
- 『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』을 신축 운영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,

-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4호에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받아 사용하며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였으며
- 안 제26조 별표2에 각종대회 및 행사 등 수영장 시설·설비의 전용사용자에

대한 사용료 및 다이빙장 사용료를 별표2와 같이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장 일반 사용자로 구분 징수하며

- 안 제28조제3호에 수영장 월회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하였을 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신설하였으며
- 복지회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장에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
 - 안 제37조는 복지회관의 사용대상, 안 제38조는 시설사용, 안 제39조는 사용료, 안 제39조의 1은 사용료 감면과 안 제40조는 복지회관 사용 제한, 안 제41조에는 사용자 책임, 안 제42조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4. 9월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을 개장하여 운영한 결과 그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는 것과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그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
- 수영장의 월정액 회원에 한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

사유와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객실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